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88호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규 칙

○ 규 칙 제 1140 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 성 가 족 과 2

훈 령

○ 훈 령 제 418 호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총 무 과 5

고 시

○ 고 시 제 37 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토 지 정 보 과 14

회 람								
--------	--	--	--	--	--	--	--	--

규 칙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4년 3월 25일

남동구 규칙 제1140호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을 고려한다.

제3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가목
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를 “청소년안
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로,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은 개정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0조)
-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항 신설 (안 제12조)

훈 령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4년 3월 25일

남동구 훈령 제418호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구의 명칭,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행사)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남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청의 접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 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구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3.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4.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 여부
-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를 신청인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소관부서의 장 및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기관 · 단체	기관(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생년월일	
요청사유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내용				
행사주최				
행사주관				
후원예정기관명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행사장소				
참석대상				
참석예정인원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남동구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				
신청기관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전화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생년월일	
행사명				
승인일자				
행사목적				
행사주최(주관)				
행사장소				
참석대상 및 인원				
행사내용				
행사기간	년 월 일부터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승인조건				
기타참고사항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남동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남 동 구 청 장				

[별지 제3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

일련 번호	행 사 현 황				승인일자	소관부서
	행 사 명	승인대상 (기관 · 단체)	장 소	행사기간		

[별지 제4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행 사 명				
일 시 / 장 소	일 시		장 소	
행 사 기 관	주 최		후 원	
참 여 인 원				
후원받은 내용	※ 후원명칭 사용, 구청장상, 축사 등			
행 사 세 부 내 용	※ 행사진행 경과, 수상자 명단, 참가현황 등			
특 기 사 항	※ 행사진행과정 중 특이사항, 건의사항 등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후원행사의 사용 승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남동구 명칭의 영예성을 제고하고 행사의 공익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행사 명시 : 안 제3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 안 제4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준 및 관리방법 : 안 제5조
- 행사진행 과정 지도점검 근거 : 안 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기준 명시 : 안 제7조
- 후원명칭 사용 행사에 대한 사용결과 확인 : 안 제8조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4-37호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 고시

남동구 남촌동 30번지 일원 등에 신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좌 표	
	X(m)	Y(m)
	불 임	
기 준 원 점 명	세계측지계좌표	
소 재 지	남동구 남촌동 30번지 일원	
설 치 일 자	불임참조	
표 지 재 질	불임참조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3점)	

불 임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별도첨부) 1부. 끝.

지적기준점(도근점) 성과표

연번	구분	기준점명	세계		중부		가리		소재지	설치일 (관측일)	표지재질	비고
			X	Y	X	Y	X	Y				
1	지적도근점	9231	537019.01	175363.81					인천 남동구 남촌동 30번지 일원	2024.02.01	표철	신설
2	지적도근점	9232	537010.12	175424.16					인천 남동구 남촌동 30번지 일원	2024.02.01	표철	신설
3	지적도근점	9233	537009.33	175477.89					인천 남동구 남촌동 30번지 일원	2024.02.01	표철	신설